



"악용 막는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반출·신고 지연 시 추징**

[이주의 초점]

「관세법 시행령」,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할당관세 추천서에 반출기한 명시 및
나프타 주·부산물도 할당관세 적용 (4p)

[위클리 뉴스]

“유가 급등 틈탄 비축 차단” 휘발유·경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덤핑방지관세’ 4년 주기 점검... 정기덤핑심사제로
우회수입 차단
관세청, 면세품 교환 간편화 및 FTA 원산지검증
절차 개선 등 10대 중점과제 선정
영국, 철강 쿼터 60% 축소·관세 50% 추진 (7p)

[품목분류 동향]

미 품목별 관세 대상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미국 HTSUS와 한국 HSK 연계 및 비교 분석 (20p)

[오피니언, 인도 통관]

“협정 활용의 마무리 vs. 사후검증이 중요” 한·인도
인식 차이서 비롯된 원산지증명서 애로사항 (14p)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3월 23일(통권 제2171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관세법 시행령」 개정...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반출·신고 지연 시 추정

관세행정실무해설

- 18** 질의응답사례
면 계량기계의 HS Code

07 Weekly News

품목분류동향

- 20** 품목분류해설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오피니언

- 14** 시선, 인도 통관
오 한 흠 KOTRA 뉴델리무역관(관세사)
“협정 활용의 마무리 vs. 사후검증이 중요”
한·인도 인식 차이서 비롯된 원산지증명서
애로사항
-

「관세법 시행령」 개정…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반출·신고 지연 시 추징

할당관세 추천서에 반출기한 명시 및 나프타 주·부산물도 할당관세 적용

오는 4월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품목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수입업자의 고의적 반입 지연과 유통 지연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월 18일 밝혔다.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에 추가

올해 3월 기준 할당관세 운용 대상 품목은 총 88개다. 미국 관세 대응 지원을 위한 철강 9개 품목, 자동차 6개 품목과 물가·수급안정 품목으로 식품원료(22개), 에너지(4개), 수산물·과일(4개) 등 총 30개 품목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관세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이다.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높거나 유통구조가 복잡한 품목, 또는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일부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혜택을 적용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며 가격 상승 시점을 노리는 방식으로 시장 왜곡을 유발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를 도입하고 보세구역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추가해, 과세가격의 최대 2%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추천기관이 발급하는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과 반출 의무기한을 명시하고, 해당 정보를 세관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해 통관 단계에서의 관리·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

현행	개정안
□ 할당관세 부과 요청 절차 ○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자료 제출 -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등 - 할당관세 적용 세율·인하이유, 적용기간 - 수량 제한 시 수량 및 산출 근거 <추가>	□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 ○ (좌동) - 집중관리 품목 지정 희망 시 이유, 근거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추천 요건 의무화(「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

현행	개정안
□ 할당관세 수량 할당 방법 ○ 할당관세 수량 범위 내 주무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의 추천 - 다만,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순위로 할당 <신설> <신설>	□ 집중관리 품목 추천 요건 의무화 ○ (좌동) ○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 기한 등의 요건을 정하여 추천 ○ 추천 요건 위반 해당 수량의 물품은 추천 취소 가능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된 물품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에 추가(「관세법 시행령」 제248조) ●

현행	개정안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대상물품 * 보세구역 장치 30일 경과 후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0.5~2% 부과 ○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추가>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 추가 ○ (좌동)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

■ 나프타 적용 확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지원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는 해당 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나프타(naphtha)를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사의 사내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은 올해 생산하는 나프타 주·부산물에도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적용되는 할당관세(2026년 기준 3→0%) 혜택이 확대되며, 관련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 범위 확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9) ●

현행	개정안
□ '26년 할당관세 적용 물품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이 사내 정유공정에 재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 주·부산물은 나프타에서 제외	□ 적용 범위 확대 ○ (좌동) *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합병된 기업에 대해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이 사내 정유공정에 재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 주·부산물도 나프타에 포함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관세법」상 대항조치 절차 마련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 「관세법」은 제79조(대항조치)에서 외국이 특정 물품에 대한 양허 철회·수정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양허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해외 대항조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3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도입하자 EU 집행위원회는 260억유로 규모의 대항조치를 즉각 발표한 뒤 유예한 바 있다.

이번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항조치 대상 국가와 물품, 피해 규모와 산출내역, 관세 부과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통상 협상이나 분쟁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대항조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항조치 시행을 위한 준용규정 신설(「관세법 시행령」 제95의2) ●

■ 대항조치 규정 내용(「관세법」 제79조)

- 외국의 특정 물품에 대한 양허 철회·수정 등에 대해 해당 조약에 근거하여 양허 정지, 관세 부과 등 조치 가능
 - 대상 국가, 시기,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신설>	□ 대항조치 시행을 위한 절차 규정 ○ 보복관세 규정*(「관세법 시행령」 제86조) 준용 * 보복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와 제출 자료 등에 대해 규정

출처: 재정경제부

이번 개정안은 3월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할당관세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 정책 수단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 급등 틈탄 비축 차단” 휘발유·경유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최근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석유제품 수입신고 관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가 3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휘발유·경유·등유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 속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 물량을 신고하지 않고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며 가격 변동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비축 행위를 사전 차단해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31~50일 지연 시 과세가격의 0.5%, ▲51~80일 1%, ▲81~110일 1.5%, ▲110일 초과 시 최대 2%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부과 한도는 500만원이다.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HS 10단위 기준 3개) ●

할당관세 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자동차 휘발유	제2710.12-1000호	2026.3.13. ~ 2026.5.12.
경유	제2710.19-3000호	
등유	제2710.19-2010호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석유제품 수입량(내수용) ●

(단위: 톤)

품목(HS 10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2월	2026년 2월	동기 대비
자동차 휘발유 (HS 제2710.12-1000호)	15	1만 6,582	1만 6,608	-	1	-
경유 (HS 제2710.19-3000호)	5만 3,053	3만 7,184	2만 8,444	6,235	3,422	△45.1%
등유 (HS 제2710.19-2010호)	0.6	0.2	0.6	0.1	0.05	△20.1%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 품목도 추가 지정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14일만에 '주의' 단계로 격상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3월 18일 15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상황의 심각성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중동 상황 발생 후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 석유화학·플랜트·공급망 및 산업 영향 등 대응 방안을 점검해온 산업부는 ▲중동 주요 산유국 정세 불안 증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 확산, ▲사태 발생 이후 40% 내외 유가 상승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유 자원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산업부는 자원안보 위기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공급 확대 및 수요 관리 방안을 강화했다. 우선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400만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장기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해 '원유 공급망 협력 MOU'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월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국제공조에 동참해 2,246만배럴의 비축유를 할당받았다. 비축유 방출 시기 및 물량은 IEA 사무국과 협의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원유 수요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를 통해 공공 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민간 분야에 대한 자발적 캠페인 및 필요시 차량 5부제 도입과 같은 의무 수요 절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 서준식 기자 |

'덤핑방지관세' 4년 주기 점검... 정기덤핑심사제로 우회수입 차단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인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3월 19일 밝혔다. 기존의 비정기적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입 건별로 조사하거나 특정 시기 및 사안 발생 시 기획 관세조사 중심으로 실시했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덤핑 조사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2025년 1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도입해 덤핑방지관세 적용 품목을 4년 주기로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수입통관 자료와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 업체를 선별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 자료 등을 포함한 통합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 변경,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2026년 2월 기준) ●

연번	품목명	품목	대상국	관세율(%)
1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제철/금속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7.17~25.82
2	부틸글리콜에테르	화학	사우디아라비아	43.58
3	FDY	섬유	중국	3.95~10.91
4	인쇄제판용평면모양 사진 플레이트 (오프셋 인쇄판, 더블레이어 제품)	기타	중국	3.60~7.61
5	폴리아미드 필름	화학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4.90~28.60
6	이음매 없는 동관	제철/금속	중국, 베트남	9.98~18.12
7	수산화알루미늄	제철/금속	중국, 호주	13.99~37.96
8	백시멘트	유리/도자	이집트	60.83
9	PET 수지	화학	중국	7.00~7.98
10	OPP 필름	화학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2.15~25.04
11	H형강	제철/금속	중국	28.23~32.72
12	인쇄제판용평면모양 사진 플레이트 (오프셋 인쇄판)	기타	중국	8.78~10.32
13	PET 필름	화학	대만, 태국, UAE	3.19~60.95
14	플로트 판유리	유리/도자	중국	36.01
15	부틸글리콜에테르	화학	미국, 프랑스	20.10~25.00
16	PET 필름	화학	중국, 인도	2.20~36.98
17	페로실리코망간	제철/금속	베트남, 인도	2.30~11.04
18	도공인쇄용지	종이/목재	일본, 중국, 핀란드	8.22~16.23
19	합판	종이/목재	말레이시아	4.73~38.10
20	합판	종이/목재	중국	3.30~27.21
21	침엽수 합판	종이/목재	중국	7.15
22	합판	종이/목재	베트남	9.78~31.28
23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철/금속	베트남	11.37~18.81
24	석유수지	화학	중국, 대만	3.07~18.52
25	스테인리스강 후판	제철/금속	중국	21.62
26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	제철/금속	중국	27.91~38.02
27	차아황산소다	화학	중국	15.15~33.97
28	파티클보드	종이/목재	태국	11.82~17.19

출처: 관세청

관세청, 면세품 교환 간편화 및 FTA 원산지검증 절차 개선 등 10대 중점과제 선정

관세청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출범해 10대 중점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선정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 불편 해소 분야 5개 과제, 수출입기업 지원 분야 5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개인 화주의 과오납 환급 신청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3월 중 시행된다. 5월부터는 상표권 침해로 해외직구 물품이 통관 보류된 경우 구매자가 직접 세관에 ‘통관 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하는 대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문 조회 체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대리인뿐만 아니라 수출입 업체도 결정문 통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세공장 운영인이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 반입신고를 위해 의무 시행하던 고무도장 날인 절차를 폐지하고 반입신고서 작성 시 전산입력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면세품 교환 절차도 개선된다. 7월부터는 출국 시 구매한 면세 범위 이내 물품을 입국 후 교환하고자 할 경우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고도 시내면세점에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이다.

분야	과제 개요
국민불편해소	1. 해외 여행객 편의 제고를 위한 면세품 교환 절차 개선 교환 시 자진신고와 재출국 필수 → 면세 한도 이내는 방문·우편·택배 가능
	2. 상표권 침해로 통관 보류된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절차 개선 구매자가 세관에 발급 요청 → 유니패스에서 통지서 바로 발급
	3. 개인 화주 과오납 환급신청 결과 알림톡 제공 유니패스 시스템 접속 개별 조회 → 알림톡으로 실시간 제공
	4. 품목분류사전심사(재심사) 결정 통지·시스템 조회 체계 개선 대리인에게만 결정문 통지 → 수출입업체에도 결정문 통지
	5. 보세공장 ‘장외작업장’ 물품 반입 신청절차 개선 신청서에 항목마다 고무도장 날인 → 날인 폐지(전산 입력으로 가능)

6월부터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규제 문턱은 낮아질 예정이다. 수출입화물의 통관 검사 비용 신청 기한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불가항력 사유로 신청 기한 60일을 넘긴 경우 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든 전망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도 완화된다. 시정조치를 완료한 수량은 먼저 거래와 판매를 허용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또한 복합물류보세창고로 반입된 물품의 수입통관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화물의 분할·합병·재포장 등을 세관 승인 없이 상시 수행할 수 있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통관이 제한됐지만 운영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

증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FTA 원산지검증 제도도 개선된다. 원산지 위반 기업에 제공하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컨설팅인 평가회의를 수출 원산지검증뿐만 아니라 수입 원산지검증 시에도 제공하며,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FTA 수입 원산지 자율점검 단계를 생략하고 원산지 조사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분야	과제 개요
수출입 기업지원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예외인정 규정 신설 검사 완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연장 허용
	2.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거래정지에 따른 기업 부담 최소화 시정조치 완료까지 거래·판매 불허 → 조치 완료한 일부 물품 거래·판매 허용
	3. 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물품 수입통관 제한적 허용 원칙적으로 수입통관 불허 → AEO 기업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
	4. FTA 원산지검증 종료 후 사후 컨설팅 대상 확대 수출 원산지검증 후에만 개최 → 수입 원산지검증 후에도 가능
	5. FTA 수입 원산지 자율점검 절차 개선 자율점검은 필수 절차 → 기업 요청 시 자율점검 생략

출처: 관세청

관세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6 관세청 국민 바로 해결단’도 모집한다. 3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준식 기자 |

“영국도 철강 장벽” 쿼터 60% 축소·관세 50% 추진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조치 도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철강 통상환경이 한층 경직될 전망이다.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 인상 등 강도 높은 보호조치가 포함되면서 우리 철강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월 19일(현지시간) 영국정부는 ‘신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 확대에 대응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초안에 따르면 철강 수입 쿼터는 현행 대비 약 60% 축소되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였던 관세율이 50%로 두 배 인상된다. 또한 철강의 생산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조강(melt&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되고 있어 원산지 판정 기준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가별 또는 품목별로 쿼터를 어떻게 감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향후 세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국정부는 이번 조치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최혜국(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8조(양허 수정) 절차도 개시할 예정이

다. 이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되며,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정책과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철강 업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3월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영국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약 2.3%(2025년 기준 64만톤, 15위)를 차지한다.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쿼터가 60%로 축소될 경우 일정 수준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수 있다.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뿐 아니라 철강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면서 “영국 측과 협의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의 철강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저가 철강 제품을 억제하고 자국 철강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다만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에서는 원가 상승과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영 경제금융대화에서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린지 화이트 영국 재무부 국제차관보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문제, 경제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향후 철강 무역조치와 관련한 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성은 기자 |

인도발 관세 리스크 ‘모니터·전자칠판’ 품목분류 대응 전담팀 출범

관세청이 인도 관세당국과의 관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축해 분쟁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응팀은 지난 3월 11일 첫 회의를 열고 분쟁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및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를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봐 정보기술협정(ITA)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관세를 부과했다.

분쟁 물품	물품 설명	인도 측 입장
대형 모니터	화상회의·광고게시판 등에 사용하는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갖춘 모니터(디지털 사이니지), 큰 사이즈의 일반 모니터와 OTT 재생 가능한 스마트 모니터로 DVI, HDMI 단자 등을 갖춘 것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님. ITA 적용 대상에 미해당
전자칠판	터치스크린을 갖춘 디스플레이 스크린, 컴퓨터, 스피커, 마이크와 입력 및 출력 포트가 동일 하우징에 구성된 것으로, 전자식 칠판, 강의 또는 회의 등에 사용하며 안드로이드 OS를 갖춘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 앱 다운로드와 자유로운 프로그램 사용 가능	기타 모니터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세계관세기구(WCO)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일체로 된 전자칠판을 ‘컴퓨터(HS 제8471호, 0%)’로 최종결정했으나, 인도 측은 이를 ‘기타 모니터(HS 제8528.59호, 20%)’로 판단해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WCO 및 WTO 등 국제기준에 근거한 논리를 마련해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주요국이 디스플레이 모듈을 완제품으로 분류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WCO 논의를 주도, 해당 제품을 무관세인 중간재로 이끌어낸 바 있다. | 김성은 기자 |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RCEP으로 확대” 한·중 관세당국 협력

한국과 중국 관세당국이 10년 만에 최고위급 양자회의를 재개하고 원산지 정보교환, 위험관리 공조, 지식재산권 보호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양국의 교역 규모와 공급망 연계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통관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3월 1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확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지역 세관 간 협력 강화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구체화했다.

먼저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한·중 FTA에만 적용되던 EODES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확대 적용되며,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도 EODES 교환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수입통관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통관 절차 간소화와 ‘종이 없는 무역’ 환경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표준화된 위험관리 정보교환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위험관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상시 소통을 위한 전담 연락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도 확대된다. 기존 실무자 중심 협의체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지재권 침해 정보 공유, 세관 공무원 교류 및 연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김성은 기자 |

미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자료 발간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중대형차량 및 버스, 구리, 목재 등 미국의 품목별 관세 대상 주요 품목의 미국 HTSUS와 한국 HSK를 연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이 직간접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주간 관세무역정보>는 본지에 게재된 품목분류해설 가운데 미국 관세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한미 품목번호를 비교분석한 내용[저자 김성채(PwC 관세법인 한국HS연구원 원장)]을 엮어 본 자료로 구성했다.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주간 관세무역정보’ 카테고리에서 확인 및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요 국과의 다자동맹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인도 특별전략 적동반자관계를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도 진출과 관련해 복잡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관세사가 한·인도 CEPA 활용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협정 활용의 마무리 vs. 사후검증이 중요” 한·인도 인식 차이서 비롯된 원산지증명서 애로사항

- 한·인도 CEPA 활용 방안 ④ CAROTAR와 Form I -



오 한 흠 | KOTRA 뉴델리무역관(관세사)

(※ 본 콘텐츠는 2026.1.12. 발행된 본지 제2162호 ‘오피니언-시선, 인도 통관’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적용을 위해 정확한 HS Code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호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에 인도 세관에서 CEPA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해다. 인도는 여느 국가와 달리 FTA를 적용할 때 협정 원산지증명서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Form I’로, 이러한 요구는 인도의 국내법인 CAROTAR 2020에 근거하며, 이후 개정을 거쳐 현재는 CAROTAR 2025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CAROTAR 체계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보다, 인도 세관이 해당 거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협정세율 적용의 실질적인 관건이 된다.

1. CAROTAR 2020의 정의와 도입 목적



출처: AI 생성 이미지

CAROTAR 2020(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은 인도가 FTA 및 CEPA 등 무역협정 적용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의 행정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 규칙이다. 이는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변경하는 제도가 아니라, 인도 세관이 협정 원산지 요건을 검증·관리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행정 규범에 해당한다.

CAROTAR는 인도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근거해 제정됐으며, FTA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해 원산지 입증 책임을 수입자에게 명확히 귀속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인도 세관은 협정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됐더라도 해당 증명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협정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관 검증을 전제로 적용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인도 관세당국이 기존 FTA·CEPA 활용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만으로는 원산지 남용이나 우회수출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CAROTAR 체계는 CEPA의 원산지 기준이나 양허 내용을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며, 인도 세관이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검증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집행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Form I의 개념과 법적 성격

이러한 CAROTAR 체계에서, 인도 세관이 협정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바로 'Form I'다. Form I는 CAROTAR를 시행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세율

을 적용하려는 수입자가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정보를 기록한 서식이다. 이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충족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보유·제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즉, Form I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협정세율 적용에 대한 책임 주체를 수입자로 명확히 전환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인도 세관은 Form I 제출을 통해,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한 사후검증 및 관세조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3. Form I 작성 및 제출

인도 세관은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Form I 서류 제출을 법적으로 '항상'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Form I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지연되거나 추가 검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Form I가 제출됐다고 해서 협정세율 적용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인도 세관은 Form I 접수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수출기업이 작성·제공해야 할 자료가 연쇄적으로 요청되는 경우가 많기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상 인도 세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수출자의 제조공정 설명자료 및 공정도
- 원재료 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 역내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 산정 내역
- 원재료의 원산지 관련 증빙자료

4. 주요 애로사항

한국 기업으로서 가장 큰 애로는, 국내에서는 문제없이 발급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가 인도 통관 단계에서 추가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FTA 활용 실무에 익숙한 기업일수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협정 활용의 '완성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인도식 검증 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애로의 근본 원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심의 한국식 FTA 실무와, 사후검증을 중시하는 인도식 집행 구조 간의 인식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 준비한 자료와 인도 세관이 Form I 이후 요구하는 자료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그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지연되거나, 인도 수입자가 협정 적용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우리 기업은 추가 가격자료 제출과 관련해 종종 애로를 겪는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산업인 철강·화학 산업의 경우, 특정 원재료의 사용 여부나 원가 구조 자체가 중요한 기업기밀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인도 세관이 Form I 서류 외에 보다 구체적인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범위와 제출 방식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인도 관세청이 발간한 CAROTAR 해설자료(Q&A)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해설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입증에 대해 반드시 모든 원가 분해 자료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산지 기준 충족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제공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아울러 한·인도 원산지 결정기준 중 역내부가가치 창출비율(RVC)이 '공제법(deduction method)'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출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산정 구조를 고려할 때, **모든 재료에 대해 명칭과 가격을 일괄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특히 주요 원재료가 역내산인 경우에는 해당 재료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명칭과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RVC 충족 여부를 입증할 여지가 있다.** 결국 핵심은 자료를 제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애로사항뿐 아니라 그밖에 실무적으로는 인도 수입자가 수출자와 충분한 정보 공유 없이 기존 거래 관행이나 추정에 따라 Form I을 작성·제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나 충족 근거가 부정확하게 기재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원산지 검증이나 관세조사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협정세율의 사후적용(소급 환급)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시점에 Form I 제출이나 관련 자료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수출기업이 뒤늦게 자료를 보완하더라도 협정 혜택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실무상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인도 수입자는 통관 리스크를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회피하려 하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5. 맺음말

결국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끝으로 협정 활용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Form I 작성 단계까지를 하나의 관리 범위로 인식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반복 거래 품목일수록 Form I 기재 내용과 원산지 판단 근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입자와의 정보 공유를 제도화하는 것이 CAROTAR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면 계량기계의 HS Code

**호퍼스케일(Hopper Scale)에 면을 투입하면
용기에 일정량이 분배되는 면 계량기계의 HS code를 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물품이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의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제 8423.30-1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의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의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제8423.81-1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제품의 균등성 검사, 표준중량에 의한 물품의 결함을 표시하거나 포장하고자 하는 물품을 설정된 중량대로 분배하기 위한 중량 설정기”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10) 호퍼(hopper)에서 방출되는 원료를 자동적으로 계량하는 호퍼스케일(hopper scales)(혼합물을 조합할 때 수 개의 호퍼로부터 방출되는 성분 원료의 중량을 계량하는 스케일을 포함한다) (11) 포대나 용기 속에 미리 예정된 재료를 넣어주기 위한 저울”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물품의 국내 품목분류 사례를 안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결정 세번	제8423.30-1000호
우엉, 당근, 양파 등 절단 채소를 일정한 양으로 계량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 계량제어 시스템, 호퍼, 핀컨베어, 호퍼스케일 등으로 구성된 중량 측정 기기임. - 규격: 1,095×2,750×1,960mm, 300kg - 계량 능력: 20개/분(150g 절단 양배추 기준) - 작동 원리: 계량 대상별 목표 값을 설정하고 절단 채소를 호퍼에 투입하면, 핀컨베어에 의해 호퍼스케일에 이송되고 재료의 아날로그 중량 신호를 로드셀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일정한 양을 연속적으로 계량함. - 용도: 절단 채소 계량용	

특수통관 / 자매브랜드의 합산과세 적용

자매브랜드의 경우 동일 판매자로 합산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합산과세의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돼 있습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와 같이 입항일 기준(제2호)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묶음배송(1개의 운송장)으로 반입되는 때는 그 1개의 운송장(B/L, Bill of Lading)에 대한 금액을 검토해야 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합산과세 기준에서 자매브랜드를 같은 해외 공급자로 볼지는 규정상 확인되지 않으며, 심사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통관 건과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지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특수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개명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을 별도로 변경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상의 개명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개명 처리한 후부터는 수취인의 명의를 개명 후의 이름으로 해야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義와 일치하게 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개명 처리 방법

인터넷 검색 사이트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및 클릭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메뉴 > 개명 후 이름으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휴대폰,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하면, 개명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개명 후 이름으로 자동 변경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1. 개요 및 경과



이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 본지는 2025년 제2139호(7.21. 발행)에서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①’로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을 수록한 바 있다. 그후 미국 상무부는 관세 대상 철강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항공기 부분품 관련 면제 품목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까지 추가된 조치를 반영한 분석 결과를 게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알루미늄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25%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포고문 10895에 서명한 데 이어 2025년 6월 4일 이를 다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 10947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일부터 알루미늄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제품별 관세율은 알루미늄 함유량에 따라 산정되며, 알루미늄 재료 이외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기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은 포고문 10895의 이행을 위해 포고문에서 언급한 알루미늄제품의 추가관세 부과를 위해 미국의 HTSUS 제99류를 개정하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이후에도 상무부는 새로운 물품을 수입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공고를 잇달아 발표했다. 현재까지¹⁾ 미국 정부의 조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대통령 포고문 10895(2025.2.10.): 알루미늄제품 및 파생제품에 25% 추가관세 부과

포고문 10895의 부속서에는 미국의 HTSUS 8단위 기준으로 123개 코드를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중 제76류의 알루미늄제품은 19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제83류와 제84류 등에 분포돼 있다. 특이한 점은 제9506호(운동용구)와 제9507호(낚시용구) 중 22개 품목이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포고문 10895 본문에서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 EU, 영국 등 기존에 관세 면제나 쿼터 혜택을 받던 국가들에 대한 모든 예외 조치를 철회하고,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규정했다.

한국의 경우 철강과 달리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별도의 쿼터 없이 10%의 관세 부과를 감수해 왔다. 그리고 포고문 10895의 조치에 따라 한국산 알루미늄제품에 부과되던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됐다.

2) 미국 상무부 공고(2025.3.10.): 포고문 이행을 위한 HTSUS 제99류 개정 공고²⁾

포고문 공포 이후 2025년 3월 5일,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은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연방관보에 공고하면서 수입조정 대상 품목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 공고에서 상무부는 포고문 10895의 취지에 따라 포고문 부속서에 언급된 123종의 품목만 아니라 수입쿼터 폐지로 25% 추가관세 편제로 복귀하게 된 품목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HTSUS 제99류 제Ⅲ절 주 제19호 (g)항의 물품

- * 제7601호의 알루미늄 괴
- * 제7604호의 알루미늄 봉과 프로파일
- * 제7605호의 선

1) 본 도서는 2026.3.1. 기준으로 작성됐다.

2) '미국 내 알루미늄 수입 조정에 관한 포고문 10895에 따른 알루미늄 관세 부과 이행(Implementation of Duties on Aluminum Pursuant to Proclamation 10895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연방관보 번호: 90 FR 11251, 문서번호: 2025-03596

- * 제7606호의 판·시트(sheet)·스트립
- * 제7607호의 박
- * 제7608호와 제7609호의 관
- * 미국 통계코드 제7616.99.51호의 주조 및 단조품

② HTSUS 제99류 제Ⅲ절 주 제19호 (i)항의 물품

- * 미국 소호 제7614.10.50호와 제7614.90.20호, 제7614.90.40호, 제7614.90.50호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등
- * 미국 소호 제8708.10.30호의 범퍼 스탬핑
- * 미국 소호 제8708.29.21호의 바디 스탬핑

3) 미국 상무부 공고(2025.4.4.): 포고문 10947 이행 및 대상 품목 추가 공고³⁾

이후 2025년 4월 4일, 자국 산업계의 긴급 요청을 반영해 알루미늄 파생제품 목록에 알루미늄 캔에 담긴 맥주(제2203호)와 빈 알루미늄 캔(제7616호)을 추가하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4) 미국 대통령 포고문 10947(2025.6.3.): 추가관세 25%를 50%로 인상

2025년 6월 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10895와 그 이행 공고를 통해 발표된 수입조정 대상 물품에 부과하던 추가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포고문 10947)에 서명했다.

5) 미국 상무부 공고(2025.8.19.): 포고문 10947 이행 및 대상 품목 추가 공고⁴⁾

그리고 이어 2025년 8월 19일, 산업안보국은 포고문 10895에 따른 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로 공고했다. 이 공고에서는 기존의 포고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제76류 일부 물품이 추가로 편입되는 한편,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하는 기계류 및 그 부분품 류가 대거 포함됐을 뿐 아니라 알루미늄제 용기(container)를 사용하는 제품군까지도 광범위하게

3)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에 관한 포고문 10895에 따른 알루미늄 파생제품(맥주 및 빈 알루미늄 캔)에 대한 관세 부과 이행(Implementation of Duties on Aluminum Derivatives Beer and Empty Aluminum Cans Pursuant to Proclamation 10895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연방관보 번호: 90 FR 14786, 문서번호: 2025-05884

4)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대상 포함 절차의 채택 및 규정(Adoption and Procedures of the Section 232 Steel and Aluminum Tariff Inclusions Process)', 연방관보 번호: 90 FR 40326, 문서번호: 2025-15819

포함됐다.

이들 물품의 상세 목록과 적용세율은 미국의 HTSUS 제99류(Chapter 99)의 제3절(Sub-Chapter III)에 기재돼 있다⁵⁾.

이들 조치에 따라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알루미늄제품은 MFN 세율 이외에 추가관세 50%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 민간 항공기, 엔진, 부품, 구성품 등은 이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호에서는 포고문 10895와 산업안보국의 공고문에 포함된 물품을 모두 통합해 설명하겠다. 제2항에서는 제76류 중심으로 미국이 지정한 수입조정 대상물품과 그에 대응되는 우리나라의 HSK와의 연계 분석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물품과 관련한 HTSUS 분류체계를 상세히 제공해 대상 품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3항에서는 제76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에 포함되는 수입조정 대상물품(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목록과 그에 대응되는 HSK 품목코드의 간략한 연계표를 제시한다.

또한 제2항과 제3항의 연계표에는 참고를 위해 해당 물품이 앞서 언급한 항공기 부분품 수입 조정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2. 미 수입조정 대상 알루미늄제품(제76류)의 HSK 코드 분석

제76류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알루미늄제의 1차 원료 또는 이를 단순가공한 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601호부터 제7609호까지 분류된다. 본격적인 알루미늄제 제품은 제7610호부터 포함되는데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이, 제7611호부터 제7613호에는 알루미늄제 용기가, 제7614호에는 알루미늄제 로프와 케이블이 각각 분류되고, 그 밖의 제품은 제7615호와 제7616호에 각각 분류된다.

HS 제7601호, 제7604호, 제7605호, 제7606호, 제7607호, 제7608호와 제7609호는 수입조정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당연히 이들 호에 속하는 모든 HSK 코드의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포고문 10895는 제76류에서 주로 알루미늄제 완제품에 해당하는 제7610호 이후의 각 호의 물품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수입조정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5) 이 책에서 언급한 알루미늄제품 및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적용대상 목록은 HTSUS 제99류 주 제19호 (g)항, (i)항, (j)항 및 (k)항의 목록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 제7610호(수입조정 대상 2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 … <후략>			
7610.10	0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7610.10-0000	
7610.90	00	- 기타		7610.90-1000 7610.90-8000 7610.90-9000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용 부분품 등이 분류된다. 철강제품의 경우 제 73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모두 수입조정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HSK 코드 기준으로는 제7610호에 포함되는 4개 코드의 물품이 모두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612호 및 제7613호(수입조정 대상 4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기스용 제외)			
7612.10	00 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7612.10-0000	
7612.90		기타			
	10	- 용량 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7612.90-1000	
	50 00	- 기타		7612.90-9010 7612.90-9020 7612.90-9030	
7613.00	00 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기스용으로 한정한다)		7613.00-1000 7613.00-2000	

제7612호와 제7613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각종 용기가 분류된다. 철강제품으로 본다면 제7310호와 제7311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모두 수입조정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HSK 코드 기준으로는 제7612호와 제7613호에 포함되는 7개 코드의 물품이 모두 수입조정 대상이다.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용량이 300리터 이상인 대형의 철강제 용기도 수입조정 대상에 포함된

반면, 알루미늄의 경우 300리터 이상의 대형 용기는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 제7614호(수입조정 대상 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얇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10	- 연결구가 부착되지 않았고 제품 형태로도 되지 않은 것	7614.10-0000	
	50	- 연결구가 부착되었거나 제품 형태로 된 것		
7614.90		기타		
		- 연결구가 부착되지 않았고 제품 형태로도 되지 않은 것		
	20	-- 전기전도체	7614.90-0000	
	40	-- 기타		
	50	- 연결구가 부착되었거나 제품 형태로 된 것		

제7614호에는 알루미늄제의 연선이나 케이블이 분류된다. 알루미늄 케이블로서 강(steel)이나 그 밖의 금속의 심(core)을 사용한 것은 알루미늄의 함유 중량이 많은 경우에 한정해 이 호에 분류한다. 제7614호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615호(수입조정 대상 12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11 00	-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20	기타 -- 조리(cooking) 및 주방용구 --- 에나멜 또는 광택처리되었거나 눌러붙음 방지처리가 된 것 ---- 주물(cast)			
	15	----- bakeware(스토브 위에 올려 사용하 기 부적합한 조리기구)		7615.10-9010	
	25	----- 기타		7615.10-9020	
	30	---- 기타		7615.10-9030	
	15	----- bakeware(스토브 위에 올려 사용하 기 부적합한 조리기구)		7615.10-9090	
	25	----- 기타		7615.20-1000	
	50	--- 에나멜이나 광택처리되지 않고 눌러붙음 방지처리도 안된 것 ---- 주물(cast)		7615.20-9000	
	20	----- bakeware(스토브 위에 올려 사용하 기 부적합한 조리기구)			
	40	----- 기타			
	71	---- 기타			
	25	----- 음식의 조제, baking, 재가열 및 저 장에 적합한 용기(두께 0.04mm 이 상 0.22mm 이하인 것) ----- 기타 cookware			
	30	----- bakeware(스토브 위에 올려 사용 하기 부적합한 조리기구)			
	55	----- 기타			
	80	----- 기타			
	91 00	-- 기타			
7615.20	00 0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20-1000 7615.20-9000	

관세율표 제7615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가정용품이나 위생용품이 분류되며, 미국 HTSUS 10단 위 코드상으로는 12개 세부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우리나라의 10단위 HSK 기준으로는 7개 품목으로 세분). 미국의 제7615호 세분류 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르면서도 복잡하다. 예를 들면, 세분류 체계에서 호의 용어에는 없는 '조리기구(cooking ware)'라는 표현을 쓰거나 주물제품과

기타의 제품, 또는 광택처리가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으로 구분하는 등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중 HTSUS 제7615.10.1100호의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제7615호에서 HTSUS 코드와 HSK 코드를 일대일로 비교해 연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나 HSK상으로는 제7615호에서 제7615.10-1000호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616호(수입조정 대상 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10		못, 압정, 스테이플, 스크루, 볼트, 너트, 스크루 홀,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0 00	- 못, 압정, 스테이플			
	30 00	- 리벳			
	50 00	- 코터와 코터핀			
		- 기타			
	70	-- 직경 6mm를 초과하는 자루, 나사산 또는 홀(hole)이 있는 것			
	30	--- 스레드 패스너(Threaded fastner)			
	90	--- 기타			
	90	-- 기타			
	30	--- Threaded fastner			
	90	--- 기타	ex	7616.10-0000	
7616.9		기타			
7616.91	00 00	알루미늄 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그릴, 망, 울 타리			
7616.99		기타			
	10 00	- Luggage frame		7616.99-1000	
	51	- 기타		7616.99-9010 7616.99-9020 7616.99-9090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7616.10 소호에는 못, 압정, 볼트 너트 등의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된다. 이 소호에서 수입조정 대상 물품은 HTSUS 제 7616.10.9090호의 물품으로 못, 압정, 볼트, 너트, 스크루, 코터, 리벳 등 대부분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한 잔여 물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HSK상으로는 제7616.10-0000호에 포함되는 극히 일부의 물품만 조정 대상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범용성 부분품은 수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616.9 소호에는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한 그 밖의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되며, HTSUS 코드상으로는 알루미늄 선으로 만든 클로스, 그릴, 망, 울타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HSK 코드로는 소호 제7616.99호에 속하는 모든 품목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3. 미 수입조정 대상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HSK 코드 분석

포고문 10895는 제76류 이외에도 알루미늄 재료로 만든 다른 류의 제품, 특히 기계류의 부분품 등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다수 물품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알루미늄의 비중에 따라 수입조정 조치에 따른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2025년 8월 19일, 산업안보국의 공고를 통해 수입조정 대상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종류와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확대된 파생제품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최초 포고문에서 규정한 물품과 같이 제76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을 포함한 비금속 재료를 주로 해서 만드는 제품, 장치, 기계류 또는 그 부분품 종류다.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 HS 제15부 이후에 분류된다. 공고문에는 제82류부터 제87류까지, 그리고 제94류 등에 해당하는 다수의 품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그 특성상 철강 재료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제84류(기계류)에 해당 품목이 가장 많다.

둘째는 알루미늄제 포장용기(container)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밀크, 조제식료품, 맥주, 유기·무기화합물, 화장품, 페인트 등은 유통 과정에서 알루미늄제의 캔이나 드럼, 탱크 등의 용기에 담겨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물품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알루미늄 용기의 우회 수입이 미국 산업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알루미늄제 용기를 사용하는 품목군 전체를 감시망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최초 포고문과 추가 공고에 포함된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알루미늄제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및 산물(수입조정 대상 7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0402.99	68	-- 그 밖의 밀크와 크림(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ex	0402.99-1000	
				ex	0402.99-9000	
0402.99	70			ex	0402.99-1000	
				ex	0402.99-9000	
0402.99	90			ex	0402.99-1000	
				ex	0402.99-9000	
2106.90	99	98	--- 그 밖의 조제식료품	ex	2106.90-1010	
				ex	2106.90-1020	
				ex	2106.90-1090	
				ex	2106.90-2000	
				ex	2106.90-3011	
				ex	2106.90-3019	
				ex	2106.90-3021	
				ex	2106.90-3029	
				ex	2106.90-9010	
				ex	2106.90-9021	
				ex	2106.90-9022	
				ex	2106.90-9023	
				ex	2106.90-9030	
				ex	2106.90-9040	
				ex	2106.90-9050	
				ex	2106.90-9060	
				ex	2106.90-9070	
				ex	2106.90-9091	
				ex	2106.90-9099	
2203.00	00		맥주		2203.00-0000	
2710.19	30	50	--- 그 밖의 석유와 역청유(steam cylinder oil)	ex	2710.19-7210	
2903.43	10		포화비환식 탄화수소 플루오로메탄(HFC-41), 1, 2 - 디 플 루 오 로 에 탄 (HFC-152)과 1,1-디플루오 로에탄(HFC-152a)		2903.43-0000	
2903.45	10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 (HFC-134a)과 1,1,2,2-테트 라플루오로에탄(HFC-134)		2903.45-0000	
2903.49	00		기타[트리플루오로메탄 (HFC-23) 제외]		2903.49-1000 2903.49-9000	
2903.51	10		2, 3, 3, 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1, 3, 3, 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ze)과		2903.51-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2903.59	90	그 밖의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2903.59-0000	
3208.10	00	비수성 매질에 분산한 페인트, 바니쉬, 에나멜	3208.10-1010 3208.10-1090 3208.10-2000 3208.10-3000	
3208.20	00	아크릴이나 비닐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8.20-1011 3208.20-1019 3208.20-1020 3208.20-1030 3208.20-2011 3208.20-2019 3208.20-2020 3208.20-2030	
3208.90	00	기타	3208.90-1011 3208.90-1019 3208.90-1020 3208.90-1030 3208.90-9011 3208.90-9019 3208.90-9020 3208.90-9030	
3209.10	00	수성 매질에 분산한 페인트, 바니쉬, 에나멜	3209.10-1011 3209.10-1019 3209.10-1020 3209.10-2010 3209.10-2020	
3209.90	00	기타	3209.90-1011 3209.90-1019 3209.90-1020 3209.90-9011 3209.90-9019 3209.90-9020	
3213.90	00	세트 상태가 아닌 화가용 물감 등	3213.90-1000 3213.90-2000 3213.90-9000	
3214.10	0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3214.10-1060 3214.10-1080 3214.10-1090 3214.10-2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3214.10-9000	
3303.00	1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향수와 화장수	플로럴 워터		3303.00-1000	3303.00-2000	
3303.00	20		기타				
3303.00	30	알코올을 함유한 향수와 화장수					
3304.30	0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30-1000 3304.30-9000		
3304.99	50	그 밖의 화장품			3304.99-1000 3304.99-2000 3304.99-3000 3304.99-9000		
3305.10	00	두발용 제품류	샴푸		3305.10-0000		
3305.30	00		헤어 래커(hair lacquer)		3305.30-0000		
3305.90	00		기타		3305.90-1000 3305.90-2000 3305.90-9000		
3306.90	00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약과 치실 제외)			3306.90-1000 3306.90-2000		
3307.10	10	면도용 제품류	알코올 비함유		3307.10-1000	3307.10-9000	
3307.10	20		알코올 함유				
3307.20	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3307.20-0000		
3307.49	00	그 밖의 실내용 방향 조제품			3307.49-0000		
3307.90	00	그 밖의 화장용품			3307.90-1000 3307.90-3000 3307.90-4000 3307.90-9000		
3401.30	1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	방향성분 함유		3401.30-0000		
3401.30	50	활성제품과 조제품	기타		3401.30-0000		
3402.31	90	선형 알킬벤젠 술포산과 그 염(방향성분 비함유)		ex	3402.31-0000		
3402.49	90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방향성분 비함유)		ex	3402.49-0000		
3402.50	11	소매포장된 조제세 제 등	방향성분 함유		3402.50-1000	3402.50-2000 3402.50-9000	
3402.50	51		방향성분 비함유				
3402.90	10	그 밖의 조제 세제 등	합성세제		3402.90-1000		
3402.90	30		기타(방향성분 함유)				
3402.90	50		기타(방향성분 비함유)				
3403.19	10	석유나 역청유를 함 유한 조제윤활유(방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50% 이상		3403.19-1000 3403.19-3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3403.19	50	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은 제외)	기타		3403.19-4000 3403.19-5000 3403.19-9000	
3403.99	00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은 조제윤활유(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은 제외)			3403.99-1000 3403.99-2000 3403.99-9000	
3405.10	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5.10-0000	
3405.20	0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5.20-0000	
3405.40	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3405.40-0000	
3405.90	00	그 밖의 광택제(차체 광택제 제외)			3405.90-1030 3405.90-1090 3405.90-9000	
3506.10	50	순중량 1kg 이하로 소매포장된 글루(동물성 글루와 카제인 글루 제외)		ex ex ex	3506.10-1000 3506.10-2000 3506.10-9000	
3506.91	10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점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패널 제조용)		3506.91-1000	
3506.91	50	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기타		3506.91-9000	
3506.99	00	그 밖의 접착제			3506.99-1000 3506.99-9000	
3808.59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기타)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한 것	ex ex	3808.59-1000 3808.59-9000	
3808.59	40		살균제	ex ex	3808.59-1000 3808.59-9000	
3808.61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순중량 300그램 이하 포장)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한 것		3808.61-1000 3808.61-9000	
3808.61	50		기타			
3808.62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순중량 300그램~7.5킬로그램 이하 포장)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한 것		3808.62-1000 3808.62-9000	
3808.62	50		기타			
3808.69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기타)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한 것		3808.69-1000 3808.69-9000	
3808.69	50		기타			
3808.91	15	살충제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한 것	ex	3808.91-1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ex	3808.91-9000	
3808.91	25			ex	3808.91-1000	
				ex	3808.91-9000	
3808.91	30		무기원료를 함유한 것	ex	3808.91-1000	
				ex	3808.91-9000	
3808.91	50		기타	ex	3808.91-1000	
				ex	3808.91-9000	
3808.94	10	소독제	방향성 소독제를 함유한 것		3808.94-0000	
3808.94	50		기타			
3809.91	00	섬유산업에서 사용하는 완성가공제 등			3809.91-0000	
3810.10	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조제품 등			3810.10-1000 3810.10-9000	
3811.19	00	안티녹(anti-knock)제(납화합물을 기본재료로 한 것 이외의 것)			3811.19-0000	
3811.21	00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는 윤활유 첨가제			3811.21-0000	
3814.00	10	유기혼합용제	5~25퍼센트의 방향성분 함유		3814.00-1020	
3814.00	20		25퍼센트 이상 방향성분 함유		3814.00-1030	
3814.00	50		기타		3814.00-1090 3814.00-2110 3814.00-2190 3814.00-2910 3814.00-2990	
3820.00	00	부동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3820.00-1000 3820.00-2000	
3824.99	93	97	그 밖의 화학공업생산물	ex	3824.99-1000	
				ex	3824.99-2100	
				ex	3824.99-2210	
				ex	3824.99-2290	
				ex	3824.99-2900	
				ex	3824.99-3100	
				ex	3824.99-3910	
				ex	3824.99-3990	
				ex	3824.99-4100	
				ex	3824.99-4200	
				ex	3824.99-4300	
				ex	3824.99-4400	
				ex	3824.99-5100	
				ex	3824.99-5200	
				ex	3824.99-5300	
				ex	3824.99-61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ex	3824.99-6200	
			ex	3824.99-6300	
			ex	3824.99-6400	
			ex	3824.99-6500	
			ex	3824.99-6600	
			ex	3824.99-7100	
			ex	3824.99-7200	
			ex	3824.99-7300	
			ex	3824.99-7400	
			ex	3824.99-7500	
			ex	3824.99-7600	
			ex	3824.99-7700	
			ex	3824.99-8000	
			ex	3824.99-9010	
			ex	3824.99-9020	
			ex	3824.99-9030	
			ex	3824.99-9040	
			ex	3824.99-9052	
			ex	3824.99-9053	
			ex	3824.99-9059	
			ex	3824.99-9090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은 그 자체로는 수입조정 대상이 아니나 알루미늄제 용기에 수용된 채로 거래되는 경우 그 비중에 따른 추가관세가 포함되며 알루미늄 재료를 제외한 본품 자체는 HTSUS 코드상 세율이나 글로벌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 그 밖의 알루미늄재료를 사용한 제품, 기구, 기계류 및 부분품(수입조정 대상 126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6603.90	81 00	우산의 기타 부분품	ex	6603.90-9000	
7308.20	00 35	풍력터빈용 타워	ex	7308.20-0000	
8302.10	30 00	경첩과 그 부분품 자동차용으로 설계된 것 (알루미늄제)	ex	8302.10-0000	
8302.10	60	기타	ex	8302.10-0000	○
8302.20		카스터(caster)와 그 부분품		8302.20-0000	○
8302.30	30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철강, 알루미늄, 아연제의 것)	ex	8302.30-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8302.41	30		건물용으로 적합	도어클로저	ex	8302.41-1000	
8302.41	60		한 장착구, 부착구	기타(철강, 알루미늄, 아연제의 것)	ex ex	8302.41-1000 8302.41-9000	
8302.42	30		가구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철강, 알루미늄, 아연제의 것)		ex	8302.42-0000	○
8302.49	60		기타(철강, 알루미늄, 아연제의 것)		ex ex	8302.49-1000 8302.49-9000	○
8302.50	0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302.50-0000	
8302.60	30		자동도어 폐지기			8302.60-0000	
8302.60	90		부분품				
8305.10	00	50	그 밖의 서류철용 피팅		ex	8305.10-0000	
8306.30	00		사진틀, 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8306.30-1000 8306.30-2000	
8307.90	60	00	알루미늄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를 부착하지 않은 것)		ex	8307.90-0000	
8309.90	00	20	알루미늄제의 캡	음료용 캔의 것	ex	8309.90-1000	
8309.90	00	25		기타	ex	8309.90-9000	
8412.90	90	70	부분품	풍력터빈 블레이드	ex	8412.90-9000	○
8412.90	90	75		풍력터빈 허브	ex	8412.90-9000	○
8413.81	00		그 밖의 펌프			8413.81-1000 8413.81-2000 8413.81-9000	○
8414.59	65	90	기타의 팬(축류형)		ex ex	8414.59-1000 8414.59-9000	○
8414.80	16		그 밖의 기체압축기(터보차저 제외)		ex ex ex ex	8414.80-9211 8414.80-9219 8414.80-9220 8414.80-9230	○
8415.90	80	25	-- 공기조절기용 기타 부분품	증발코일	ex	8415.90-0000	○
8415.90	80	45		자동차용의 것			○
8415.90	80	85		기타			○
8418.10	00		일체형 냉장 냉동고			8418.10-1010 8418.10-1020 8418.10-1030 8418.10-9000	○
8418.99	80	05	---- 냉장기기의 부분품		ex	8418.99-1000	
8418.99	80	50			ex	8418.99-9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8418.99	80	60				
8419.50	10	00	- 열교환기	알루미늄 플레이트-핀으로 된 것	8419.50-1000 8419.50-2000	○
8419.50	50	00		기타	8419.50-9000	○
8419.90	10	00	- 즉식식 또는 저장식의 물가열기의 것		8419.90-9010	○
8422.90	06	40	가정용 접시 세척기의 부분품	ex	8422.90-1000	
8424.89	90		그 밖의 분사, 분무용 기기		8424.89-1000 8424.89-9000	
8424.90	90	80	제8424호 기기의 기타 부분품 (소화기, 피스톤 펌프 스트레이, 샌드 블라스팅 머신, 스팀젯 분사기의 것 제외)	ex ex ex ex ex	8424.90-2000 8424.90-3000 8424.90-9010 8424.90-9020 8424.90-9090	
8443.16	00	00	곡면 인쇄용 기계		8443.16-0000	
8450.11	00		완전자동 세탁기(세탁능력 10킬로그램 이하)		8450.11-0000	
8450.20	00		세탁기(세탁능력 10킬로그램 초과)		8450.20-0000	
8451.21	00		건조기		8451.21-0000	
8467.22	00		수지식 공구(전동 톱		8467.22-0000	
8467.29	00		기를 갖춘 것)	기타	8467.29-0000	
8467.81	00		수지식 공구	체인 소우	8467.81-0000	
8467.89	50			기타(금속가공에 부적합한 것)	ex ex ex ex	8467.89-1010 8467.89-1020 8467.89-1090 8467.89-9000
8473.30	20		제8471호 기계의 부분품	인쇄회로 조립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ex	8473.30-9090
8473.30	51			기타	ex	8473.30-9090
8479.89	95	99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 (HTSUS 제8479.89호에 따로 계기된 모든 기기 제외)	ex	8479.89-9099	○
8479.90	85	00	제8479호 기계의 부분품	- Trash compactor의 기타 부분품	ex	8479.90-9090
8479.90	95	96		- 기타의 부분품(산업용 로봇, 나무 또는 코르크용 프레스, 공공작업용 기기, 금속 취급용 기기 등에 사용하는 것 제외)	ex	8479.90-9020 8479.90-9030 8479.90-9050 8479.90-9070 8479.90-909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8481.90	90	60	탭, 코크, 밸브의	밸브바디(제8481.20호의 것 제외)	ex	8481.90-0000	
8481.90	90	85	부분품	기타	ex	8481.90-0000	
8483.40	50	20	풍력터빈용 기어박스 등		ex ex ex	8483.40-9020 8483.40-9030 8483.40-9090	○
8483.90	50	20	풍력터빈용 기어박스 등의 부분품		ex	8483.90-2000	○
8486.90	00		제8486호 기기의 부분품			8486.90-1000 8486.90-2030 8486.90-2040 8486.90-2090 8486.90-3050 8486.90-3060 8486.90-3090 8486.90-4000	
8487.90	00	80	기타의 기계류의 부분품			8487.90-1000 8487.90-9090	
8501.64	01	10	제8502.31호의 풍력발전세트용 교류발전기		ex	8501.64-0000	
8502.20	0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8502.20-1000 8502.20-2000 8502.20-3010 8502.20-3090 8502.20-4000	
8502.31	00	00	풍력 발전세트			8502.31-1000 8502.31-2000 8502.31-4000	○
8503.00	95	20	모터의 부분품(정류자, 고정자 및 회전자 제외, 18.65와트 이하인 모터용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품)		ex	8503.00-1000	
8503.00	95	46	제8501호 및 제8	제8501.61호의 교류발전기의 것	ex	8503.00-2010	
8503.00	95	70	502호 기기의 기 타 부분품	제8502.31호의 풍력발전세트의 것	ex	8503.00-2010	
8504.31	20		용량 1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의 그 밖의 변압기			8504.31-1000	○
8504.31	40					8504.31-2000	○
8504.31	60					8504.31-9010 8504.31-9020 8504.31-9040	○
8504.33	00		용량 16~500킬로볼트 암페어의 기타 변압기			8504.33-1000 8504.33-2000 8504.33-9010 8504.33-9020	○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8504.33-9040	
8504.34	00		용량 500킬로볼트 암페어를 초과하는 기타 변압기		8504.34-1000 8504.34-2000 8504.34-9010 8504.34-9030	
8504.90	20		제8504호 기기의 부분품		8504.90-1000 8504.90-9000	
8504.90	41					
8504.90	65					
8504.90	75					
8504.90	96					
8508.70	00		진공청소기의 부분품		8508.70-1000 8508.70-2000 8508.70-3000	
8513.90	20		Flashlight의 부분품		ex 8513.90-0000	
8515.90	20		용접용 기기의 부분품		8515.90-1010 8515.90-1090	
8516.90	50		제8516호 기기의 부분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기타 부분품	ex 8516.90-0000	
8516.90	80	50		소호의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의 기타 부분품	ex 8516.90-0000	
8517.71	00		-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8517.71-1000 8517.71-9000	○
8517.79	00		- 기타의 제8517호 기기의 부분품		8517.79-1010 8517.79-1020 8517.79-1030 8517.79-2000 8517.79-3000 8517.79-4000	
8529.90	73	00	제8524호~제8528호 기기의 부분 품	레이다, 무선 항행용 기기, 무 선 원격조절기의 부분품	ex 8529.90-4000	○
8529.90	97	60		무선 원격조절기의 기타 부분 품	ex 8529.90-4000	○
8536.90	85	85	- 그 밖의 접속용 기기		ex 8536.90-9010 ex 8536.90-9090	
8538.10	00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 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 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8538.10-0000	
8541.90	00		제8541호 기기의 부분품		8541.90-2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8541.90-3000 8541.90-9000	
8543.90	88	85	- 기타(제외: 물리기상증착기 부분품, 비행기록장치 조립품, 입자가속기 부분품, 전자담배 부분품)	ex	8543.90-9000	
8544.19	00		권선용 전선(구리로 만든 것 제외)		8544.19-0000	
8544.49	20	00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1000볼트 이하의 전기도체	ex ex ex	8544.49-1090 8544.49-2090 8544.49-9090	
8544.49	90	00	기타(구리로 만든 것 제외)	ex ex ex ex ex ex ex	8544.49-1012 8544.49-1090 8544.49-2012 8544.49-2090 8544.49-9012 8544.49-9090	
8544.60	60	00	그 밖의 1000볼트 초과의 전기도체(전기통신용 및 구리로 만든 것 제외)	ex ex ex ex ex ex	8544.60-1010 8544.60-1090 8544.60-2010 8544.60-2090 8544.60-3010 8544.60-3090	
8547.90	00	20	그 밖의 절연용 물품 - 도관	ex	8547.90-0000	
8547.90	00	30	나선가공된 조인트	ex	8547.90-0000	
8547.90	00	40	그 밖의 조인트	ex	8547.90-0000	
8708.10	30		범퍼와 그 부분품 범퍼		8708.10-0000	
8708.10	60		범퍼의 부분품			
8708.29	21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바디 스탬핑	ex	8708.29-0000	
8708.29	51	60	차체의 기타 부분품	ex	8708.29-0000	
8708.80	65	90	서스펜션 시스템의 기타 부분품(제외: 트랙터의 것, 주철의 것, 빔 행거 브래킷)	ex	8708.80-0000	
8708.99	68	90	파워트레인의 기타 부분품(제외: 트랙터의 것, 주철의 것, 주철제의 것, 유니버설 조인트(제8703호 및 제8704호 차량의 것))	ex	8708.99-9000	
8716.39	00	40	화물수송용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벤 타입)	ex	8716.39-0000	
8716.80	50	10	산업용 핸드 트럭	ex ex	8716.80-1000 8716.80-9000	
8807.30	00	60	기타(Civil aircraft용 부분품 제외)	ex ex ex	8807.30-1000 8807.30-2000 8807.30-3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9013.90	80		제9013호 기기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9013.90-9000	
9031.90	91	95	제9031호 기기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ex	9031.90-9000	○
9401.79	00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그 밖의 의자(속을 댄 것 제외)			9401.79-1000 9401.79-9000	
9401.99	90	81	의자의 기타 부분품		ex	9401.99-1000 9401.99-9000	
9403.10	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9403.10-0000	
9403.20	0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9403.20-1000 9403.20-9000	○
9403.99	10	40	부분품(나무로 만 든 것 제외)	모터차량용	ex	9403.99-0000	
9403.99	90	10		유아침대, 유모차, 요람용의 것	ex	9403.99-0000	
9403.99	90	15		어린이 안전 놀이터의 것	ex	9403.99-0000	
9403.99	90	20		용접한 wire rack	ex	9403.99-0000	
9403.99	90	40		steel rack의 부분품	ex	9403.99-0000	
9403.99	90	45		기타	ex	9403.99-0000	
9405.99	40	20	알루미늄제의 램프 포스트와 그 베이스		ex	9405.99-0000	○
9506.11	40	80	기타의 스키(제외: 크로스 컨트리용 스키, 스노보드)		ex	9506.11-0000	
9506.51	40		론테니스 라켓	줄을 매지 않은 라켓	ex	9506.51-0000	
9506.51	90			부분품과 부속품	ex	9506.51-0000	
9506.59	40	40	배드민턴 라켓 및 라켓 프레임		ex	9506.59-1000	
9506.70	20	90	롤러스케이트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부츠에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		ex	9506.70-0000	
9506.91	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506.91-0000	
9506.99	05		기타의 운동용구	양궁용 물품	ex	9506.99-0000	
9506.99	15			야구용 장비	ex	9506.99-0000	
9506.99	20			풋볼, 축구, 폴로	ex	9506.99-0000	
9506.99	25	80		필드하키	ex	9506.99-0000	
9506.99	28			라크로스 스틱	ex	9506.99-0000	
9506.99	50			스노슈즈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ex	9506.99-0000	
9506.99	60			기타	ex	9506.99-0000	
9507.30			낚시 릴			9507.30-0000	
9507.90	60		물고기 뜰채, 잠자리채 및 이와 유사한 네트		ex	9507.90-1000 9507.90-9000	
9603.90	80	50	그 밖의 브러쉬와 빗자루		ex	9603.90-0000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도 역시 알루미늄 재료의 비중에 따라 추가관세가 부과되며 알루미늄을 제외한 본품 자체는 HTSUS 코드상 세율이나 글로벌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HS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 등이 분류되며, 미국 HTSUS 10단위 코드상으로는 36개 세부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우리나라의 10단위 HSK 기준으로는 10개 품목으로 세분). 전반적으로 제8302호의 HSK 세분류 코드 대부분이 미국의 수입조정 물품과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조정 조치가 면제될 수 있다.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 팬, 기체압축기 등이 분류되며 HTSUS 코드상으로 1개의 물품만 수입조정 대상이다. 해당 물품은 제8414.59 소호의 ‘기타의 팬’ 중에서 파이프 오르간용 블로워, 자동차용에 적합한 것, 터보차저와 수퍼차저를 제외한 나머지 팬 중에서도 원심형과 축류형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팬에 한정된다. 미국의 수입조정 대상인 팬은 원심형과 축류형을 제외한 기타의 것이 해당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사류형 팬(diagonal fan, mixed flow fan)이나 블레이드가 없는 팬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제8419호에는 가열, 배소, 증류, 응축, 냉각, 온도 변화에 따른 상태의 변화에 따라 재료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분류된다. 이러한 기계에는 비교적 복잡한 기계 구조를 갖춘 것뿐 아니라 기계적·전기적 구성부품 없이 단순한 형태의 기구나 구조물의 형상을 갖춘 것까지 다양하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제8419.50 소호의 열교환기라고 할 수 있다. 열교환기는 그 특성상 서로 다른 유체(예를 들면, 고온의 증기와 냉각수) 사이의 원활한 열 교환을 위해 열 전도가 뛰어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알루미늄 소재의 열교환기는 모두 수입 조정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수출품의 미국 HTSUS와 한국 HSK를 비교 분석한 품목분류해설과 관련 철강·알루미늄·자동차·중대형 차량·구리·목재 통합 자료가 발간됐습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 주간 관세무역동향’에서 E-BOOK 확인 및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VENT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선착순 도서 증정 이벤트

2026.3.20~소진 시까지



100명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도서 증정

이벤트 안내

진행 기간: 3월 20일(금)~소진 시까지

참여 대상: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꼭 확인해 주세요

-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리며, 주문시기에 따라 도착 예정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부 이상 주문하더라도 증정 도서는 주문자(기업)당 1부씩 보내드립니다.
- 주소 등 개인정보 오기입으로 인해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이벤트는 선착순 증정 이벤트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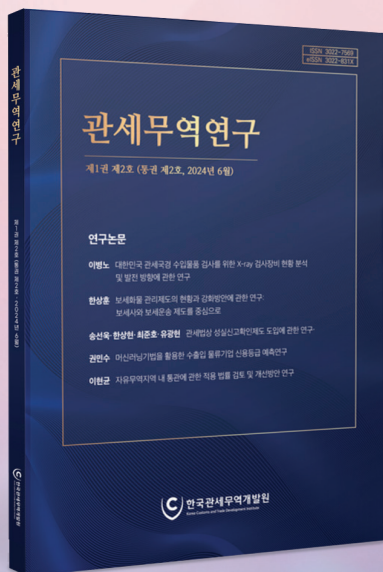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